

제2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신안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3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안
-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면
 2.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면
 3. 신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4.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5.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면
 6. 신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5면
-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신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2013

2 (제236회-본회의 2차)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호 존경하는 신안군의회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호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지난 6월 26일 제출되어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자문서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1일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지적사항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에 있는 집행내역을 재검토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관련서류와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그리고 예비비 집행사항 및 타당성,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정당성,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추진사항에 대해 집중 검토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수납액은 5852억 4774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4443억 2362만 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잔액은 1409억 2411만 원이고, 지출 잔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이 152건에 511억 5005만 원, 사고이월이 43건에 100억 9663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9건에 578억 5549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9444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2749만 원이며, 그리고 기금결산 및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관리결산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가 부족한 신안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 방문하여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여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성과 책임이 신안군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기성·합법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한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결과가 다소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정광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4.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

4 (제236회-본회의 2차)

정조례안, 신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건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는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관리 조례 제6조에는 군 소속 실과장만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위원 자격 기준에 맞춰 기금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집행부 요구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과 조문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 계속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과 연동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 기본법」 2014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유치 송달 복명서”를 “유치 송달 결과보고서”;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등에서 작성된 교부금 등의 처리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식품안전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인용한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 기업 감면규정을 최장 30년에서 15년 또는 10년까지 축소 조정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군 관내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없어 세수감축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신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제1차 임시회를 맞아

6 (제236회-본회의 2차)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근거에 의거 5년마다 신안군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저해하고 이를 예방·최소화·완화·경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략사업비 등의 산정을 토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신안군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하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간범위를 신안군 행정구역 전역 2개 읍과 12개 면 655.4㎢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인접 자체 등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고 대상 재해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등에 의한 재해이며, 계획과 수립 주기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목표연도는 10년이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2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7대 신안군의회 첫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되고 또한 군민의 삶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농촌들녘은 어느 새 황금들녘으로 물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초여름 가뭄과 폭염, 그리고 늦장마 등으로 피해가 염려 되었지만 농가와 행정이 노력하여 다행히 풍년농사를 이룬 것 같습니다.

풍년농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수확기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화목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9분 산회)

○참석공무원(19명)

- 군수	고길호
- 기획홍보실장	정영섭
- 행정지원실장	김성수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운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호
- 종합민원실장	이종순
- 해양수산과장	최훈인
- 문화관광과장	안광석
- 경제투자과장	임오중
- 환경공원과장	이세관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종원
- 도서개발과장	김수희
- 천일염산업과장	윤근학
- 세무회계과장	황광연
- 농촌진흥과장	강을원
- 기술보급과장	강행선
- 보건소장	서정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도순
- 산업단지지원사업소장	정권수

○출석의원(10명)

- 의	장	양영모
- 부의	장	최춘옥
- 의	원	장미라
- 의	원	주윤덕
- 의	원	이원용
- 의	원	이종주
- 의	원	신인배
- 의	원	정광호
- 의	원	권오연
- 의	원	조영훈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김영구
- 전문위원	김종오
- 전문위원	김형국
- 전문위원	김대길
- 의사담당당	전일권
- 통신담당당	최성은
- 속기사	김소영
- 속기사	장미옥